

< 정부관계부처 근로자 경제적 부담 완화·내수활성화 후속 조치 **금리인하** + **신용보증료** 지원 시행 >

◦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인 있는 줄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본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사업장 대표님들께서는 근로자들이 동 제도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 안내

1.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(생활안정자금의 지원)에 근거하여 결혼 적령기에 있는 근로자가 혼례비 및 생활안정자금 등 명목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저리로 생활필수자금을 용자해 주는 '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'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- (대상자)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, 월평균소득이 243만원 이하인 근로자
- (용자조건)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용자종류	용자금리
혼례비, 의료비, 자녀학자금, 부모요양비 장례비, 임금채불생계비, 임금감소생계비, 소액생계비 <i>금리 한시인하 적용기간</i>	18. 1. 1. 접수분터~ 연 2.5%
17. 7. 1. ~ 12. 31.(용자신청서 접수일자 기준) 용자금리 연 2.5% → 2.0%	※ 금리 인상 전 신청 서두르세요~

- (담보 제공 여부) 별도 담보없이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(보증료 연 0.9~1.0%) 활용
→ **신용보증료 50% 지원 : 지원기간 : 17. 9. 1. ~ 18. 12. 31.**
※ 단, 지원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음
- (신청방법) 인터넷<[희망드림근로복지넷\(www.workdream.net\)](http://www.workdream.net)>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방문접수

3. 이에 관련 사업내용을 알려 드리니 귀 사 소속 해당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용자제도와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<☎1588-0075 (상담사 연결 0번 누른후 기타 복지 3번)>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

고용노동부



근로복지공단